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안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식별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진정한 고안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안자 정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등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0.~8.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결정 이후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그 고안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고안자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에 고안자를 추가(제1항 본문에 따른 고안자의 추가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결정 전까지만 해당한다) 또는 정정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정(추가)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고안자 전원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다만, 고안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고안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실용신안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정(추가)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를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6호나목(1) 중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및 【주소】 란”을 “영문표기】 , 【국적】 ,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 【주소】 및 【거주국】 란”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10호나목 중 “일반출원보다 늦게 심사를 받는 대신 정확한 시점(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를 “유예희망시점 이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실용</u> <u>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u> <u>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u> <u>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u> <u>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u> <u>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u> <u>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u> <u>용신안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고</u> <u>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u> <u>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u> <u>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u> <u>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u> <u>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고안자의</u> <u>기재가 누락(실용신안등록출원</u> <u>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u> <u>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u> <u>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u> <u>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u> <u>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u>	<u>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 실용</u> <u>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u> <u>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u> <u>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u> <u>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u> <u>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u> <u>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u> <u>용신안등록결정 이후부터 실용</u> <u>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고</u> <u>안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u> <u>한 경우에 그 고안자의 동일성</u> <u>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고</u> <u>안자를 정정할 수 있다.</u> <u>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u> <u>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설정등</u> <u>록 전에 고안자를 추가(제1항</u> <u>본문에 따른 고안자의 추가는</u> <u>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u> <u>등록결정 전까지만 해당한다)</u>

인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
지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
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에
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
용신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고안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
하려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정정하려면 「특허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누
락(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
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
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정(추가)이유를 기재한 설
명서 1통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고
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확인서류 1통(다만, 고안자
의 서명이나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고
안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
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실용신안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심사의 순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u>에 따라 심사한다. 1. ~ 3. (생략)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	1. <u>정정(추가)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u> 2. <u>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u> 3. <u>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u> 제9조(심사의 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특허청장이 정하는 바</u>-----.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 ----- ----- ----- ----- -----
---	---

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	-----
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	-----
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	-----
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
의2, 제20조의3, 제24조부터 제2	-----
7조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	-----
31조, <u>제33조</u> 부터 제36조까지,	--- <u>제34조</u> -----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
제46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	-----
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	-----
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	-----
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	-----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부	-----
터 제120조의7까지, 제121조를	-----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	-----.
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	-----

